

정책 이슈페이퍼 13-05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구조 개선 및 법령 재정비

권역수 외

목 차

- I. 배경 및 문제점 / 1
- II. 조사 및 분석 결과 / 4
- III. 정책 제언 / 23
- VI. 기대 효과 / 26
- 〈참고자료〉 / 32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I. 배경 및 문제점

1. 연구 배경

- 2001년 ~ 2012년 기간에 811,224백만원이 투입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실태 점점을 통한 개선이 필요
 -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1975년부터 광산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제1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 사업계획(1982~1986)’이 추진된 1982년부터라고 할 수 있음. 이후 제2단계 (1987~1991) 종합개발 사업계획은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이 1989년 착수되면서 수정계획¹⁾이 수립되었고, 1990년에는 ‘석탄산업법’을 개정하여 당시까지 법적 근거가 없었던 탄광지역 진흥사업을 법제화하였음(에너지경제연구원, 1998).
 - 하지만, 급격히 쇠퇴하는 탄광지역의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치를 주요 목표로 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1995년 말, 동 법 시행령이 1996년 4월에 제정되었음.
 - 강원랜드 설립과 함께 카지노 운영수익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에 사용토록 법률에서 정하고¹⁾, 시행령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을 설치토록 하였음. 따라서 카지노사업의 수익으로 조성되는 폐광기금은 2001년부터 조성·활용되었음.
 - 이러한 폐광기금 제도는 도입 후 17년이 경과되었으며, 기금이 배당·사용

1) “...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995년 폐특법 제11조 5항)

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므로 13년이 경과하고 있음.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시행, 개선한 적이 없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2012년 초에는 기금 납부 비율을 강원랜드 세전 이익금의 20%에서 25%로 5%p 상향 조정하였으며, 법률의 적용시한도 2015년 말에서 2025년 말로 10년 재연장하였다는 점에서 운영 점검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함.

□ 기금의 용도를 당초 목적과는 달리 매우 폭넓게 인정, 무분별한 집행으로 자금 운영의 집중도 저하로 운영체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

- 현행 기금제도는 기금을 징수하여 배분은 하나, 기금사업의 사후검증이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이렇다 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기금의 용도가 광범위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의무가 없어 폐특법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사용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음. 특히, 동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관광 진흥개발 기금법, 복권 및 복권 기금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는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음. 즉 다른 기금 운영법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에 대한 종합적 심의를 하거나, 성과평가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기금성과를 평가토록 하고 있으나, 폐광기금에는 이러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특히 타 회계와의 구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성과평가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폐광기금의 운영현황 및 체계를 분석하고, 기금운영 성과 및 문제점 검토, 기금 관련 타 법령 및 제도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특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

에 대해 검토함과 함께, 각개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 필요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목적과 제도개선 자체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기금의 사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강원도)의 재량에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평가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그동안 제대로 평가를 한 적이 없음. 따라서 타 회계와의 구분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정부의 관심도도 떨어져 연간 2000억원(강원랜드 이익금+ 주식배당금)이 넘는 재정운영에 정부 감독 기능을 상실한 상황임.
- 따라서 기금 운영의 효과가 극히 저조하여 13년간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회생 근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기금제도의 개선은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등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특히, 기금의 관리체계와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폐광지역의 현황, 폐광기금의 운영현황 및 체계, 기금운영의 문제점,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분석을 통해 기금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폐광지역 경제 진흥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특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검토함과 함께, 각개 제도개선을 위한 조치 필요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목적과 제도개선 자체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음.

II. 조사 및 분석 결과

□ 폐광지역의 현황

- 지역별로 2013년 현재 석탄생산을 유지하는 시/군은 태백시, 삼척시, 화순군뿐이다. 문경시는 1995년, 보령시는 1996년, 영월군은 2003년, 정선군은 2005년 이후 석탄생산이 전무한 상태임.
- 석탄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시/군도 1988년 생산수준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 석탄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 수준 감소한 상태임. 태백시는 2012년 현재 1988년 생산의 1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화순군은 20%, 삼척시는 45%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삼척시 특히 도계읍이 아직도 석탄에의 의존도가 다소 높을 뿐 여타 지역은 석탄산업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음.

<표 1> 지역별 석탄생산 변화

(천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	합계
1988(A)	6,452	2,570	782	6,778	1,670	1,156	2,254	21,662
2012(B)	698	1,164	-	-	-	232	-	2,094
B/A(%)	10.8	45.3	0.0	0.0	0.0	20.1	0.0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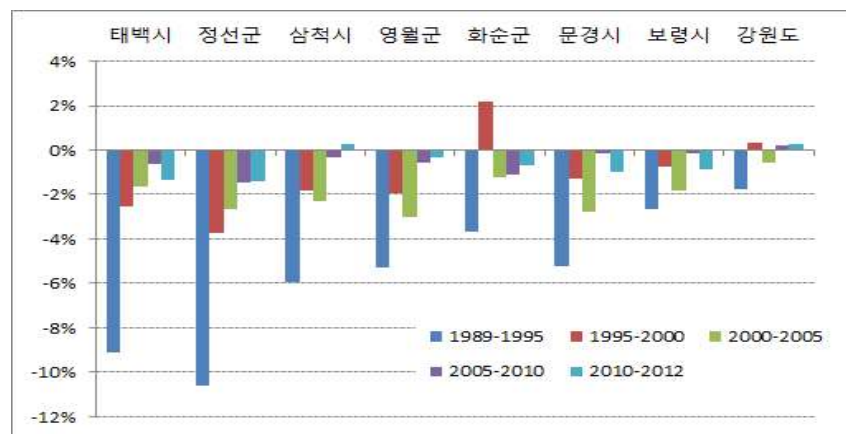
자료 : 강원도(2006.11) 및 대한석탄협회(2013)

- 인구감소 추세는 2000년대 들어서서 크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물론 사북읍(정선), 동면(화순), 성주면(보령) 등의 인구감소가 아직도 높은 편이기는 하나, 1990년대 후반기와 2005년 이후를 비교하면, 고한읍(정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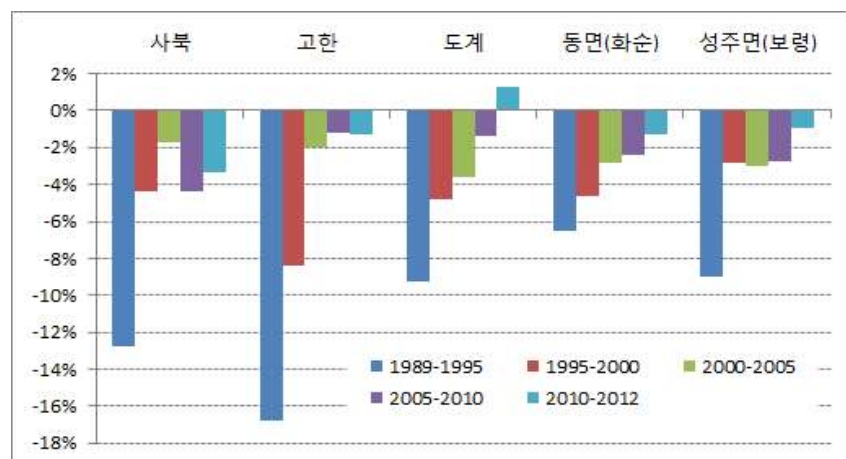
연평균 8.4% 감소에서 1.2% 감소로, 도계읍(삼척)은 4.8% 감소에서 0.6% 감소로, 동면(화순)은 4.6% 감소에서 2.1% 감소로, 그리고 마성면(문경)은 4.0% 감소에서 1.1% 감소로 크게 완화되었음. 반면, 사북읍은 4.4% 감소에서 4.1% 감소로, 성주면은 2.8% 감소에서 2.2% 감소로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완화폭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산탄지역의 인구 변화율(연평균 %)

A. 시/군



B. 읍·면



- 지역내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²⁾는 정선군과 영월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군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특히 태백시, 화순군, 문경시 등은 군지역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그간의 지역진흥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하겠음.
- 참고로 광공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액의 수준은 전국 군지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당 광공업 출하액의 경우 영월군과 보령시를 제외하고는 군지역 평균의 1/2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태백시의 경우는 군지역 평균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나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영월군도 군지역 평균의 61%에 머물러 있어 폐광지역의 광공업 유치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광공업 부가가치 수준도 군지역 평균에 비해 모두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폐광지역의 경제활동 수준은 대체로 군지역 평균에 비해 낮으나, 폐특기금의 영향으로 기반시설 및 지방재정 자립도는 군지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이제까지의 폐광지역 개발투자가 산업유치나 관광진흥 등 경제 활성화보다는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확대 등에 더 많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기반시설과 관련한 성과는 있었다고 할 수 있음.

2) GRDP가 통계방식, 통계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활동 수준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지역경제활동 수준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음.

<표 2> 지역경제 주요지표의 현황

(2010년 기준)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	화순군	문경시	보령시	군지역 평균 ³⁾
인당 GDP ¹⁾ (백만원)	14.00	27.72	19.23	20.24	14.22	13.50	18.42	20.05
천인당 사업체 수	79.9	81.0	74.6	80.8	57.6	72.3	70.8	69.5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전산업, 명)	322.6	409.4	320.6	341.9	315.0	260.3	286.9	298.9
인당 광공업 ²⁾ 출하액(백만원)	3.2	6.1	9.0	12.7	6.9	8.2	10.7	20.9
인당 광공업 ²⁾ 부가가치(백만원)	1.7	3.3	5.4	3.9	3.0	2.6	3.7	6.6
인당 자동차 등록대 수	0.38	0.41	0.36	0.41	0.39	0.37	0.39	0.40
도로포장률(%)	64.0	75.9	71.8	74.3	67.2	66.6	77.0	76.6
상/하수도 보급률 (%)	89.4	78.9	84.8	60.5	78.5	82.4	66.5	58.2
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11.8	12.2	12.5	44.6	4.3	16.8	8.4	14.0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개)	17.2	10.2	7.0	10.8	39.7	16.4	11.8	10.7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 (천㎡)	49.5	46.2	24.7	25.0	22.1	32.0	21.6	25.3
재정자립도(%)	27.0	20.0	17.0	12.0	23.0	20.0	23.0	16.4

1) 2008년 기준임. 2) 종업원 수 10인 이상 업체 기준. 3) 단순평균 기준임

자료 : 통계청(2013. 3) 및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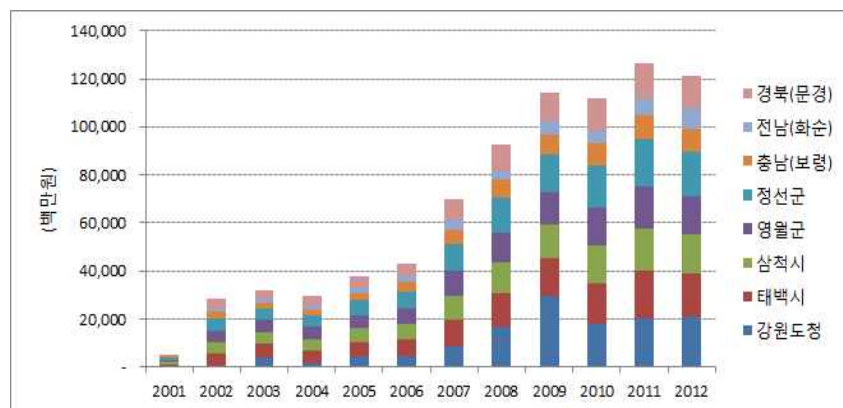
□ 기금 운영의 실태

- 강원랜드가 스몰카지노를 2000년 10월에 개장함으로써, 기금납부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음. 기금규모는 2001년 51억 원 수준에서 2002년에는 300억 원 수준에 육박하였으며, 2009년에는 처음으로 기금규모가 1,000억 원대를 돌파하여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음.
- 이러한 기금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2003년 메인 카지노 개장, 2004년 카지노

노 테이블 증설, 2005년 하이원 골프장 개장, 2006년 말 하이원 스키장 개장 등 지속적인 영업 범위 및 활동의 확대³⁾와 함께, 기금비율이 세전 순이익의 10%에서 2005년 20%로 상향 조정된데 기인하는 바가 큼. 특히 2007년 기금총액이 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나 늘어난 것은 기금비율의 상향조정이 2006년분 이익금부터 적용됨에 따른 영향이 큼.

-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기금규모의 증가가 완만하여 2010년까지 1,100억 원대를 보였으며, 2011년부터는 1,2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카지노 시설의 증설이 억제되면서 영업장의 혼잡 등으로 내장객 수의 증가가 완만해진데 따른 현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게임시설은 2004년 테이블 게임 32대가 증설된 이후 2012년까지는 증설 없이 운영되어 왔음⁴⁾.

[그림 2] 기금 지원규모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3)

- 기금의 배분은 2001~2012 기간의 누적기준으로 강원도가 74.8%를 점유하여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북(문경) 11.7%, 충남(보령) 8.2%, 전남(화순) 5.3%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음.

3)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History/html.high1?tab=2#contentPoint>

4) 2004년 2월 32대의 테이블게임 증설허가를 받아, 2012년까지 테이블게임 132대, 머신게임 960대를 운영하여 왔음(강원랜드, 2013.8).

<표 3>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현황

(2001~2012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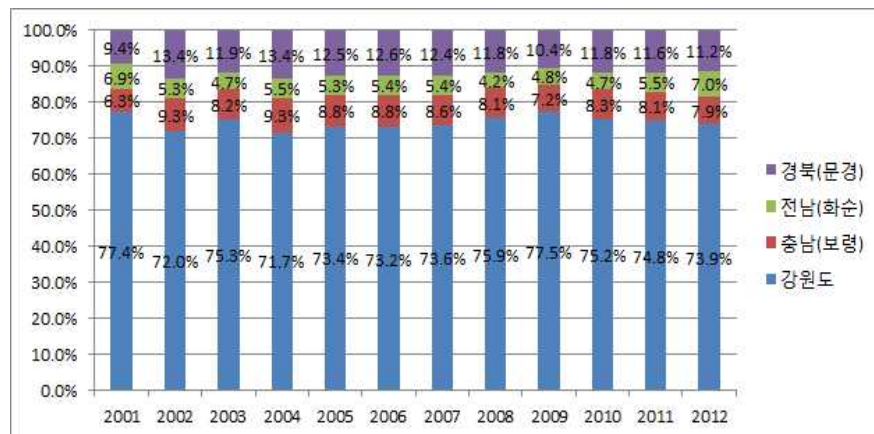
	금액(백만원)	점유율	
합계	811,224	100.0%	
충남(보령)	66,198	8.2%	
전남(화순)	43,049	5.3%	
경북(문경)	95,157	11.7%	
강원	606,820	74.8%	100.0%
도청	128,006		21.1%
태백시	125,313		20.7%
삼척시	115,144		19.0%
영월군	112,185		18.5%
정선군	126,172		20.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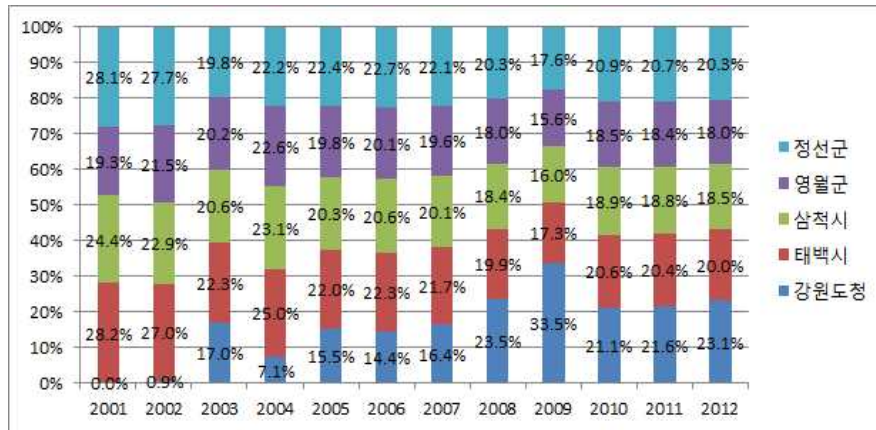
- 강원도 내에서는 도청이 21%로 배분비율이 가장 높으며, 근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시/군별로는 태백시와 정선군이 21%에 근접하여 높은 편이고, 삼척시와 영월군은 19% 수준으로 다소 낮은 편임. 따라서 강원도 내의 배분처별 배분비율 차이는 별로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 기금의 배분비율 추이

A. 각 도별



B. 강원도 시/군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3)

- 기금 배분기준⁵⁾에는 명시되지 않은 강원도청에의 배분이 관련 시/군과 비교할 때 가장 많고, 더욱이 도청에 대한 배분비율 자체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도청에 대한 배분비율의 확대는 시/군에 대한 배분비율의 축소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강원도 내 지역간 배분도 1988년의 생산실적이나 1988년 대비 생산감소와는 거리가 있음. 즉, 태백시의 경우 1988년 강원도 내 진흥지구가 있는 시/군 생산에서의 점유율이 38.9%이고 1988년 대비 2011년의 생산감소 점유율은 39.1%인데 비해, 2012년 기금배분 비율은 20.0%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정선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반대로 삼척시와 영월군은 기준

5) 자료 : 법제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2013. 3

1. 도(道)별 기금 배분금액 = 기금 기준액(A) × (같은 도 안에 진흥지구가 있는 시/군의 배분비율의 합)
2. 진흥지구가 있는 시/군의 배분비율 = $(B \times 0.4) + (C \times 0.3) + (D \times 0.3)$
 - A: 해당 연도 기금에서 제16조 제7항 단서에 따른 기금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 B: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군의 석탄생산량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군의 1988년도 점유율
 - C: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군의 석탄생산량 대비 지난 연도 전체 시/군의 석탄생산감소량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군의 지난 연도 석탄생산감소량의 점유율
 - D: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군의 인구 대비 지난 연도 전체 시/군의 인구감소율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군의 지난 연도 인구감소율의 점유율

배분비율보다 높은 배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강원도가 공통분으로 약 20%를 도청에 배분하고, 나머지의 90%는 시/군에 균등, 10%는 기준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삼일회계법인 2013 및 강원일보 2013.8).

<표 4> 2012년 강원도의 기금배분 기준비율과 실제 배분비율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합계
석탄생산 (천톤)	1988	6,452	2,570	782	6,778	16,582
	2011	689	1,168	-	-	1,856
인구 (명)	1988	115,175	132,370	74,048	119,777	441,370
	2011	50,176	72,312	40,199	40,181	202,868
1988 생산 점유율		38.9%	15.5%	4.7%	40.9%	100.0%
생산감소 점유율		39.1%	9.5%	5.3%	46.0%	100.0%
인구감소 점유율		26.4%	21.2%	21.4%	31.1%	100.0%
기준 배분율(2012)*		35.2%	15.4%	9.9%	39.5%	100.0%
실제 배분율(2012)		20.0%	18.5%	18.0%	20.3%	23.1%**

* 강원도청의 운영/관리비를 감안하지 않은 것임.

** 합계란은 강원도청에 대한 배분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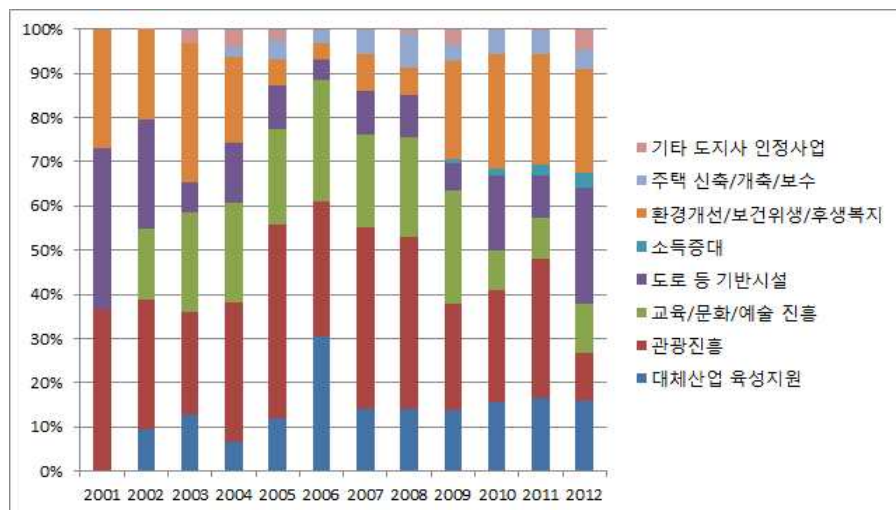
자료 : 강원도(1986), 대한석탄협회(2012), KOSIS,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 기금의 용도별 점유율은 관광진흥 및 교육/문화/예술 진흥이 감소추이를 보이는데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 환경개선/보건위생/후생복지 부문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관광진흥의 경우 점유비율이 2005년 44% 대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2년에는 10%대까지 감소하였으며, 교육/문화/예술 진흥은 2006년 27%대까지 증가하였다가 2010년 이후에는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는 2006년 5% 이하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10% 내외에서 유지되더니, 2012년에는 26%대까지 증가하였고, 환경

개선/보건위생/후생복지 분야도 2006년 4% 이하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후 25%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대체산업 육성지원의 점유율은 큰 변화 없이 2007년 이후 15% 내외를 점하고 있다. 2006년 30%대까지 점유율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음
- 그러나 이는 정선(신동 등), 화순, 문경(신기) 등의 산업단지 조성 및 보령의 대체산업 유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2005년 이전에도 점유율이 15%를 넘어선 경우는 없었음.
- 이와 같은 대체산업 육성지원 점유율의 정체와 관광진흥 점유율의 하락 추세는 결국 순수 경제활성화 부문의 기금사용 비율 축소를 초래하고 있음.
- 실제로 대체산업 육성지원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2006년 순수 경제활성화 부문의 점유율이 60%대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0년에는 40%대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26%대로 급격히 떨어졌음.

[그림 4] 기금의 용도별 점유율 추이



주 : 도로 등 기반시설 중 관광진흥 등을 위한 부분은 본래 목적사업(관광진흥 등)으로 분류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3)

- 이상과 같은 현상은 결국 폐광기금이 폐특법의 본래 목적⁶⁾이라고 할 수 있는 '폐광지역 경제진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폐광지역의 환경 및 생활여건 개선에 상당 부분이 활용되고 있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음.
- 특히 도청의 경우는 교육/문화/예술 진흥에 기금의 30%를, 환경개선/보건위생/후생복지에 20%를, 그리고 주택의 신축/개축/보수에 16%를 할애하고 있어 지역경제 진흥보다는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금 운영의 문제점

- 기금 운용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기금의 본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폐광지역 경제진흥, 즉 대체산업 육성 및 관광진흥에 활용된 비율이 43%(2001~2012 누계 기준)에 불과하며, 2006년 이후 그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임. 반면,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보건위생/후생복지 부문에서의 사용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2012년의 경우 이들 2개 부문에서 전체의 5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환경개선/보건위생/후생복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2위 또는 1위의 주요 기금 사용처가 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은 기금을 배분받는 강원도청의 경우 교육/문화/예술 진흥과 환경개선/보건위생/후생복지에 50%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순수 후생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의 신축/개축/보수에 기금의 16%를 사용하는데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
- 지역경제 진흥에의 낮은 기금사용 및 동 비중의 감소와 여타 부문에서의

6) 폐특법 제1조(목적)는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높은 기금사용은 폐광지역 현황에 그 결과가 잘 나타나 있음. 폐광지역의 인당 GRDP는 전국 군지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등 환경개선/보건위생/후생복지 부문과 도로포장률(미개통도로를 감안할 경우) 등 기반시설 부문은 군지역 평균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임.

- 기금 운용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강원도 내 기금배분의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시/군 간 차이가 미미하고, 도청의 사용규모가 가장 크면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임.
- 폐특법 시행령 제16조 8항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배분기준은 진흥지구가 있는 시/군 전체의 1988년 석탄생산량 중 해당 시/군의 생산량 점유율, 1988~직전년도 기간 중의 석탄생산 감소량 점유율, 1988~직전년도 기간 중의 인구감소비율 점유율 등에 40%, 30%, 30%의 가중치를 두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청이 활용하는 공통분(20% 수준)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90%는 시/군에 균등하게, 10%는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폐특법 시행령 제16조 8항 별표에 의한 배분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2011년을 대상으로 기준 배분율을 산정⁷⁾하여 실제 배분율과 비교할 경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등 강원도 이외 지역은 별반 차이가 없으나, 강원도의 경우는 기준 배분율에 없는 도청에의 공통분 배분으로 말미암아 배분 기준상 도청에 허용된 기금의 운영·관리비용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태백시 및 정선군은 기준 배분율보다 크게 낮게, 그리고 삼척시 및 영월군은 기준 배분율보다 높게 배분되고 있음. 특히, 영월군의 경우는 기준 배분율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7) 기금의 운영·관리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산정함.

<표 5> 기금 배분율 비교 : 실제 배분율 vs 기준 배분율

		강원도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실제 배분율 (2011년)		16.2%	15.3%	14.1%	13.8%	15.5%	8.1%	5.5%	11.6%
기준 배분율 (2011년)	(운영·관리 비용)		26.3%	11.5%	7.2%	29.5%	8.2%	5.5%	11.8%
- '88 생산	(점유율,%) (생산량, 천톤)		29.8%	11.9%	3.6%	31.3%	7.7%	5.3%	10.4%
			6,452	2,570	782	6,778	1,670	1,156	2,254
- 생산감소	(점유율,%) (감소량, 천톤)		29.3%	7.4%	4.0%	34.6%	8.5%	4.7%	11.5%
			5,731	1,445	782	6,778	1,670	918	2,254
- 인구감소	(점유율,%) (감소율,%)		18.7%	15.2%	15.2%	22.0%	8.6%	6.5%	13.8%
			55.8%	45.6%	45.4%	65.7%	25.7%	19.6%	41.4%

주 : 기준 배분율은 기금의 운영·관리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임.

자료 : 강원도(2006), 대한석탄협회(2012), 통계청(KOSIS),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 법령의 비교 검토

○ 폐광지역개발기금 법령의 개정 추이 및 내용

- 기금의 사용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시행령 제정 당시 도를 특정하지 않고 도지사가 매년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⁸⁾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9월 시행령 개정에서 카지노 소재지 도지사가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하지만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관련 조항이 2008년 10월 삭제되면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기금의 결산과 관련한 조항은 2005년 9월 시행령 개정에서 제16조에 9항을 추가하여 신설하였다. 동 조항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회계

8) 시행령 제정 당시(1996.4)에는 통상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내무부 차관보, 문화체육부 기획관리실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건설교통부 차관보, 산림청 차장, 도의 행정부지사, 통상산업부장관이 임명한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위원회의 역할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그 구성은 많이 바뀌어 2008년 위원회 폐지 당시의 위원 구성은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위원장),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산림청), 도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등이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위원회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10월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
 었음.

- 한편, 기금사업의 평가나 검증, 기금회계의 분리처리 등과 관련한 규정은
 사실상 없으며, 강원도 조례(5조)에서는 기금을 지방재정법상의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사용을
 자율적이며 융통성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상황임.

<표 6> 폐광지역개발기금 법령의 개청 추이

	카지노 이익금 처리 및 관리(법률 11조/시행령 16조)	법률식한 (투척)
법률 (1995.12) 시행령 (1996.4)	기금비율 : 카지노업 세전순이익의 75%(영업개시 후 5년까 지) / 50%(6년차부터) 기금용도 :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 교육/문화/예술 진흥사업 : 환경개선/보건위생/후생복지 사업 : 관광진흥사업 : 기타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사용계획 : 도지사가 매년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2005. 12. 31
시행령 (1999.4)	기금비율 : 10%(영업개시 후 5년까지) / 20%(6년차부터)	
법률 (2005.3) 시행령 (2005.9)	기금비율 : 카지노업+부대사업 세전순이익의 20%(법률 11조 에 명시) 사용계획 : 카지노 소재지 도지사가 매년 폐광지역개발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기금설치 : 카지노 소재지 도 기금배분처 및 기준 명시 : 배분처는 도 / 배분기준은 시· 군별 산정 기금결산보고서 :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에 익년도 4월 말 까지 제출	2015. 12. 31
시행령 (2008.10)	사용계획 : 도지사는 지경부(현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폐지) 기금결산보고서 : 지경부장관에 제출	
법률 (2012.1) 시행령 (2012.11)	기금비율 : 25%(법률 11조에 명시)	2025. 12. 31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 기금 관련 법령의 비교·검토

- 기금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지역지원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은 지자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지방채 인수,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인수,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각 지자체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서, 운용성과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함은 물론 기금 운용성과를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함. 또한 안전행 정부는 3년마다 기금성과를 분석함과 함께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금운용을 확인/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복권기금은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권위원회에 설치되어 있음. 복권위원회는 기금 사용처가 제출한 기금의 사용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하여야 함. 기금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서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고 성과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등에 따라 $\pm 20\%$ 범위에서 기금배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금 사용처는 매년 결산명세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의 구분처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평가 시행 및 평가결과에 따른 기금배분 차등, 그리고 회계의 구분처리 강제화는 기금성과의 향상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농지관리기금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

는 바대로 정부 예산회계와 유사한 처리절차를 따르고 있고, 동 기금 중 대여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 증대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해 대여, 보조, 출자의 형태로 지원될 수 있음⁹⁾.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의 집행·평가·결산을 위해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음. 매년도 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지출원인행위보고서는 매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케 하고 있음. 또한 기금 대여업무는 산업은행이 담당토록 하여 대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농지관리기금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것으로 농지의 매매, 장기 임대차, 재개발 및 조성, 농업기반시설 등에 용자, 보조 또는 투자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음. 기금에 관한 업무는 일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되어 있으며, 농업인에 대한 대출은 농협, 농협은행, 일반은행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기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농어촌공사는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도 결산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공사는 매월 기금의 운용·관리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음.

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대여, 보조, 출자 가능 사업에 대해 각각 명시되어 있다. 대여는 호텔 등 관광시설,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관광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관광지의 편의시설 등이 대상이며, 보조는 조사·연구사업이 대상이고, 출자는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한 투자조합이 대상이다. 한편, 관광 정보제공 및 홍보, 교육훈련,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국민관광 복지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에 설치되어 있음. 기금은 물이용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며,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수, 수질관리 및 시설운영, 주민 지원사업, 오염총량관리, 퇴적물 준설, 기초조사, 교육홍보 등에 사용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수변관리 기본계획¹⁰⁾,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며, 내부에 자문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운용,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기금의 결산보고서 등에 대해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¹¹⁾. 기금의 운용·관리는 국가재정법(제66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즉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말까지 5회계 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자문회의 자문,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4월 말까지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동 지침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차년도 운용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는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며,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득한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¹²⁾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 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또 다른 지역지원 법령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매년의 지원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 환경부가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8조의2 참조), 수변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동 법 제4조의2).

1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의2 및 제3조의3

12) 국가재정법 제68조

이 수립하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은 시/군/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수립토록 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사업 계획, 지원금 배분, 평가 및 결산 등을 심의토록 할 수 있으며, 발전소별로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원금은 타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분기별 사업시행 결과를 발전소별 및 단위사업별로 제출함과 함께, 매년 결산보고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지원사업의 평가¹³⁾와 관련하여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평가결과가 미흡일 경우 차년도 지원금을 10%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받은 시행자에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그러나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강원도 조례¹⁴⁾로 설치(시행령 16조)토록 하고 기금의 사용계획을 강원도가 산업부와 협의하여 매년 수립(시행령 16조)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조례로 정함. 이러한 기금운영 체제는 타 기금에 비해 너무 포괄적이라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함.

13) 평가대상은 시설용량이 50만kW 이상인 발전소,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등으로 발전소에 한정하고 있음(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참조).

14) 지방재정법 상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조례 5조)

- 시·군에 보조 또는 금융기관에 융자(조례 5조)

- 용도에 소득증대 사업, 주거환경개선, 도지사 인정 사업 등을 추가(조례 4조)

<표 7> 기금 관련 법령의 비교

	목적	체계	자금조달 및 배분	감독 및 평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조)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법 11조)	- 기금의 설치 : 강원도 조례로 설치(시행령 16조) - 기금 사용계획 : 강원도가 산업부와 협의하여 매년 수립(시행령 16조) -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조례로 정함(시행령 16조) - 지방재정법 상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조례 5조) - 시·군에 보조 또는 금융기관에 융자(조례 5조) - 용도에 소득증대 사업, 주거환경개선, 도시사 인정 사업 등을 추가(조례 4조)	- 조달 : 카지노업 및 관련시설 세전 이익금의 25% 이내(시행령 16조) - 배분 : 강원도는 산업부와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 배분(시행령 16조) - 시·군별 석탄 생산량/감소량, 인구 감소율에 따라 배분(시행령 별표) - 용도 :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시행령 16조) - 대체산업, 기반시설, 교육·문화, 환경개선, 후생복지, 관광진흥 등	- 매년도 결산보고서 제출 - 기금관리자→지경부장관(시행령 16조) - 도시사→도의회(조례 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자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 기금설치(법 3조) - 소관 중앙부처가 기금설치 제의 - 안행부장관이 기금 신설의 적합성 검토 - 기금존속기간(법 4조 및 시행령 3조) - 법률이 정한 기간 5년 이내(또는 10년 이내) - 기금의 관리·운용(법 6조) - 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법 8조) - 매년도 수립 - 지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법 13조) -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운용성과 심의 -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운용(법 17조) - 시·도간 상생발전 지원이 목적 - 지자체조합 설립, 기금을 관리·운용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법 17조의2) - 지자체 예치금 -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 차입금 - 지자체 출연금 - 기금의 용도(법 18조) - 지방채 인수 -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인수 -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 결산보고서→지방의회(법 8조) - 기금운용성과 제출(법 14조) -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 및 안행부장관에 제출 - 안행부는 3년마다 기금 성과분석 시행(시행령 8조) - 안행부는 확인/점검을 위해 자문단 구성운영(시행령 9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의 증대	- 기금관리 : 문체부장관(법 3조) - 기금의 집행·평가·결산을 위해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고용 - 기금운용위원회 설치(법 6조) -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 매년 수립(법 7조)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 기금 대여업무는 산업은행이 담당(시행령 3조)	- 재원 : 정부출연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매출의 10%), 출국납부금 등(법 2조) - 용도 : 대여, 보조, 출자로 구분하여 지정(법 5조)	- 매년도 결산보고(시행령 21조) - 문체부→기재부 - 매월 기금지출원인행위 보고서 기재부 제출(시행령 16조) - 매월 및 반기별 기금 대여상황 보고(시행령 18조) - 산업은행→문체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	- 복권위원회 설치(법 13조) -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단 및 관련 전문가(기재부 차관이 위원장)로 기재부에 설치 -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복권기금 - 복권위원회에 설치(법 21조) -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제출(법 24조) - 기금사용처→복권위원회 - 복권위원회는 계획서를 심의·조정하여 통보 - 복권기금 운용계획안 제출(법 27조)	- 재원 : 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관련 수익금 - 배분비율 명시(시행령 17조) - 용도 명시(법 23조/별표)	- 기금사업의 성과 평가(법 22조) - 성과평가편람 작성(시행령 15조의2) - 성과평가단 운영 - 평가결과 등에 따라 ±20% 범위에서 기금배분 조정(법 23조) - 결산명세서 매년 제출(법 25조) - 기금사용처→복권위원회 - 구분회계처리(법 29조)

		- 복권위원회→기재부장관		•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매6개월마다 공개 및 보고(법32조)
농지관리기금(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산화/조성/효율적 관리 및 해외농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법 31조)	• 기금운용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35조) - 일부 업무를 농어촌공사에 위탁 - 단, 농업인에 대한 대출은 농협, 농협은행, 일반은행 등을 통해 시행 -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 농어촌공사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시행령 35조)	• 재원 : 정부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차입금 등(법 32~33조) • 용도 : 농지의 매매, 장기임대차, 재개발 및 조성, 농업기반시설 등에 용자, 보조 또는 투자(법 34조) - 기금의 용자, 보조, 투자 대상에 대해 명시	• 매년도 결산보고서(법 39조, 시행령 40조) - 농어촌공사→농축산부→기재부 • 매월 기금의 운용·관리상황 보고(규칙 22조) - 농어촌공사→농축산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법 20조)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법 24조) - 환경부(차관/위원장), 국토부, 부지사/부시장, 수공사장 등으로 구성 -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물이용 부담금 징수, 기금 운용관리 - 자문위원회(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3조의2) 및 협의회(규정 3조의5) 설치·운영 -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사무국 설치 ※ 수변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법 4조의2)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법 8조의2 및 시행규칙 8조의4) - 시행계획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법 8조의3)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설치(법 20조) • 기금의 관리·운용 : 국가재정법 66조에 따름(시행령 29조)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법 16조) - 세입 : 보조금, 기금 및 타회계에서의 전입금, 수익금, 차입금 등 - 세출 : 기금의 용도(토지매수 등은 제외)	• 재원 : 물이용부담금, 차입금 등(법 21조) • 용도 : 토지매수, 수질관리 및 시설운영 비용,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관리 비용, 퇴적물 준설, 기초조사, 교육홍보 등(법 22조 및 시행령 28조)	•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사항을 매년 자체 평가 - 지방환경관서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법8조의3 및 시행규칙 8조의10) - 평가지침은 환경부 훈령으로 고시(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지침, (2010.3.10.)) • 국가재정법 66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말 사업계획서(5년간) 기재부에 제출 - 기재부는 자문회의 자문/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4월말 기금관리주체에 통보 - 기금관리주체는 기재부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차년도 운용계획을 6월말 기재부에 제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 촉진/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지역발전 기여	• 매년 지원계획 : 산업부장관이 수립(법 9조) •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법 9조) • 산업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법 3조) - 지원사업계획, 지원금 배분, 평가 및 결산 등 심의 ※ 발전소별 지역위원회 설치 가능 • 사업시행자(법 11조) -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발전사업자/원자력홍보 법인	• 조달 : 전력산업기반기금(법 13조) - 발전량/설비용량에 따른 단가 적용(시행령 27조 및 27조의2) • 배분 : 시설에서의 거리 기준(시행령 29조) • 지원사업의 종류 명시(법 10조, 시행령 19조, 22조, 24조 및 25조)	• 사업시행결과 제출(분기별) - 시행자→산업부장관 - 발전소별/단위사업별 - 타 예산과 구분관리(법 16조의2) • 지원사업의 평가(법 16조의5) - 산업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발전소 대상) - 평가결과 미흡의 경우 차년도 지원금 10% 감액 • 사업시행자는 매년 산업부장관에 결산보고(법 18조)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Ⅲ. 정책제언

- 현행 기금제도는 기금을 징수하여 배분은 하나, 기금사업의 사후검증이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이렇다 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금의 용도가 광범위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의무가 없어 폐특법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사용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용도를 대체산업 육성, 관광진흥, 지역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사업 등으로 축소하고, 기금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기금사업의 사후검증 및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금배분을 차등함으로써 기금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기금사업의 평가 및 합목적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도 필요함.
- 기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체계 개선 역시 기금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요함. 현행 기금 배분기준은 1988년 기준을 아직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광에 따른 영향에 비례하여 기금을 배분·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개선임. 특히 시/도의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시/군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성과평가를 받으면서 책임 있게 지역경제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의 확립이 필요함.
- 하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 관리주체의 개선임. 관리주체의 개선은 이미 언급한 여러 부문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기금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주체의 확립이 중요함.
- 기금의 관리주체로 독립된 제3의 기구 설치는 기금 사업계획 및 용도, 기금사업의 사후 검증, 시/도의 기금사용 등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용이하

게 하며, 필요시 평가단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즉 기금의 배분, 기금사업 계획 수립, 기금의 용도에 대한 감독, 기금의 사후 검증, 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피드백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하지만 새로운 기구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음.

- 반면,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기금의 사용계획 및 용도, 기금사업의 검증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불리점이 존재함. 물론 기금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시/도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제도 및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다 수용성 있는 평가체계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별도의 한시적인 기금관리 주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음.
- 한편, 구분회계제도 도입, 배분기준의 개선, 배분처를 시/군으로 조정 등은 관리주체의 개선안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적은 부분임. 따라서 관련 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관리주체와는 별개로 시행될 수 있음. 물론 시행사항의 점검 또는 검증을 세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주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운영위원회를 둘 경우에도 외부감사 등을 통해 점검 또는 검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임.

<표 8> 관리주체 개선안이 여타 개선안에 미치는 영향 비교

		독립된 제3의 관리주체 설치(A)	운영위원회 설치(B)
기금용도 개선	①용도를 경 제 활 성 화 중 심 으 로 축소	• 세부적인 용도 검토 가능	• 세부적인 용도 검토에 한계
	②관리주체를 통해 용도 제한	•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통제 가 능성 ※ 관리주체 역할에 용도(또 는 사업) 심의기능 명시 필 요	• 간접적인 통제 가능성 ※ 위원회 역할에 용도(또 는 사업) 심의기능 명시 필요
기금 회계제도 개선	①구분회계제 도 도입	• (영향 미미)	• (영향 미미)
감독 및 평가 강화	①별도의 평 가단 운영	• 관리주체가 평가단 구성·운 영 또는 관리주체가 직접 평 가단 역할 수행 가능 • 기금사업의 세부적인 검증이 가능	• 운영위원회가 평가단을 구 성·운영함으로써 평가단 구 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 확보가 가능 • 기금사업의 세부적인 검증 이 가능
	②정기적인 성과평가제 도 도입	• 성과평가제도의 일관성 유지 가 용이 • 평가대상사업의 세부적 검증 이 가능	• 평가의 수용성 확보에 유리 하나, 세부적인 검증 미흡 가능성
기금사업의 중·장기계 획 수립	①기금사업의 중 기 계 획 수립	•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검토가 용이	•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검토 에 한계
기금 배분기준 개선	①생산 감소 량 기준(성 과/인구변 화 등을 감 안 조정)	• (영향 미미)	• (영향 미미)
	②생 산 실 적 기준(성과/ 인 구 변 화 등을 감안 조정)	• (영향 미미)	• (영향 미미)
기금 배분체계 개선	①시/군/구에 직접 배분	• (영향 미미)	• (영향 미미)
	②시/도의 사 용용도 제 한	• 시/도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 체적인 검토가 가능	• 시/도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미진 가능성

IV. 기대효과

-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1975년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임. 1991년 석탄산업법과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탄광지역 진흥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¹⁵⁾. 하지만 폐광의 급격한 진행과 함께 탄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인구가 크게 감소하자, 정부는 탄광지역 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1995년 제정하여 지역 개발사업의 확대 및 이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음.
- 따라서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등은 상당 부분 개선된 상태임. 폐광지역의 인구감소도 2000년대 후반기 이후 안정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인당 생산액(GRDP/인)은 정선군과 영월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국 군지역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아직도 매우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그동안 폐광기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가 미미하였음을 의미함. 폐특법의 제정 목적도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¹⁶⁾에 있다는 점에서 볼 경우 문제는 심각함. 폐광기금의 2001~2012년 누계 사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체산업 육성, 관광진흥 등 순수한 지역경제 진흥용도는 전체의 43.4%¹⁷⁾에 불과함.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관광진흥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환경개선/보건위생/후생복지 등의 점유율

15) 이원우 외(1991),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p7

에너지경제연구원(1998), 『석탄산업 정책방향의 재정립 연구』, p15

16)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17) 총 누계사용액 중 점유율로 대체산업 육성지원 15.1%와 관광진흥 28.3%를 합산한 것임(<표 4-4> 참조).

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2012년 순수 지역경제 진흥 용도의 점유율은 26%대까지 떨어졌음.

- 기금의 집행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기금의 배분기준에 따른 배분율과 기금의 실제 배분율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특히 강원도의 경우 시/군 간 배분기준과 실제배분에 차이가 심하며, 강원도청의 활용비중이 관련 각개 시/군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물론 법령상으로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게 되어 있으나, 그 배분기준은 각 시/군의 배분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시/군의 배분기준에 따른 배분율에 비례하게 배분하는 것이 법률이 의도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폐광기금의 근거법인 폐특법 및 동 시행령은 기금의 조달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음. 즉 이들 법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에 대한 종합적 심의를 하거나, 성과평가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기금성과를 평가토록 하고 있으나, 폐광기금에는 이러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특히 타 회계와의 구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성과평가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 또한 기금의 용도를 폐특법의 목적과는 달리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기금 사용의 지역경제 진흥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의 배분기준이 시/군별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배분은 도에 대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음. 이외에도 기금의 배분처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남, 전남, 경북 등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강원도에 위임하여 기금사용에 대한 감독이 어려우며, 기금의 배분율도 생산실적(1988년 기준), 생산감소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기준하여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생산이 종료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는 생산실적과 생산감소 규모가 동일하게 되어 기준의 중복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구 감소율의 경우는 지역진흥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기금 배분율이 감소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

- 이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기금제도의 개선은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투명성, 효율성 등이 제고되도록 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특히, 기금의 관리체계와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개선방안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기금의 관리주체와 관련하여 ①독립된 제3의 관리주체를 설치하거나, ②현재의 체제에서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임. ①안이 이상적이긴 하나 별도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고 강원도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②안은 기금사용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을 어느 정도 제고할 수 있으나 기금 관리주체와 사용자가 동일한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곤란함.
 - 둘째로 기금의 지역경제 진흥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기금의 용도를 대폭 축소하여 대체산업 육성, 관광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산업육성 및 관광진흥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기타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사업 등에 한정토록 하거나, ②독립된 제3의 관리주체(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을 조정·제한하는 방안이 강구 될 수 있을 것임. ①안이 폐특법의 목적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안이나 시/군의 기금활용 융통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②안은 기금활용의 융통성을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금투자 집중도를 일정 부분 제고할 수 있으나 행정력을 통한 용도

제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셋째로 기금회계는 타 회계와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회계제도의 도입은 기금활용의 투명성 및 합목적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구분회계의 도입 없이는 기금활용 결과의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구분회계제도 조항을 폐특법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넷째로 기금에 대한 감독 및 평가의 강화를 위해서는 ①별도의 평가단을 운영하거나, ②정기적인 성과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①안은 기금의 세부내용에 대한 검증 및 평가가 가능하나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②안의 경우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세부내용에 대한 검증 및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물론 기금관리 주체로 독립된 제3의 관리주체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기구가 감독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도 세부적인 검증 및 평가는 어렵지만 감독 및 평가 기능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섯째로 기금사업의 중/장기 계획, 최소한 중기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중/장기 계획의 수립 유도는 기금의 계획적 및 효율적 사용을 가져오게 할 것이며, 기금활용에 대한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하여 기금활용과 관련한 합목적성 및 객관성을 높일 것임. 또한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의 융통성을 부여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추천됨.
- 여섯째로 기금배분 기준을 ①생산감소량 또는 ②생산실적(1988년 기준)으로 단순화하고, 사업성과의 평가결과 및 인구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생산감소량과 생산실적이 같아짐에 따른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배분율을 조정함으

로써 각 지역의 산업진흥 노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임. 하지만 배분기준의 변경으로 배분율이 감소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의 강구가 추천되며, ①안과 ②안을 비교할 때 ①안이 폐특법의 제정목적¹⁸⁾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끝으로 도에 의한 기금의 임의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기금배분처를 현재의 시/도에서 시/군으로 조정하거나, ②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되 시/도의 사용용도를 시/군 간 공동사업에 한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임. 어느 경우에도 배분기준과 실제배분 간의 차이를 축소케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배분기준에 비해 실제배분이 낮은 시/군의 불만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하지만 ①안의 경우에는 사업성과 평가기능의 강화와 시/군의 관리능력 제고, 그리고 인접 시/군 간의 공동사업에 대한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며, ②안의 경우에는 시/군 간 공동사업의 필요 이상 확대에 대한 제한과 배분기준에 비례하는 배분 집행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폐광기금 제도의 개선은 관련 시/군의 배분관행 개선 요구, 지역경제 진흥 성과의 미흡, 기금 관리 및 평가 체계의 미비 등으로 그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음. 특히 기금제도가 2025년까지 존치되어 향후 10년 이상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경제 진흥이 장기적·지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되어야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이 두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기금관리 체계를 독립된 제3의 관리주체를 설치하거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

18) 폐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추가하여 구분회계, 기금 사업의 검증 및 평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금 배분 기준 및 방식을 일관성 및 합목적성을 감안하여 개선해야 함.

- 이상의 대안 제시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검토된 것임. 따라서 대안의 채택을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의견 수렴 및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금 관리주체의 구성, 회계분리의 방식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책방안이 책정된 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폐특법이 만료되는 2025년은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착수된 지 45년, 폐특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는 해임. 이는 일본이 '산탄지역 진흥 임시조치법'을 40년간 유지·시행한 것과 비교되는 기간임. 또한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있는 시/군의 인구감소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반시설 및 후생복지시설, 지방재정자립도 등도 전국 군지역 평균에 육박하거나 평균을 넘어서고 있음. 따라서 폐광기금의 폐지, 또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해제에 대해 준비할 시점이 곧 이를 것으로 판단됨. 즉, 폐특법의 폐지에 따른 충격 완화방안에 대해 향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있는 시/군의 여건이 전국 군지역 평균에 육박하면서 폐광지역보다 더 열악한 지역이 많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곧 폐광지역과 여타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높이게 할 것이기 때문임.

< 참고자료 >

- 강원도, 『폐광지력개발기금 사용계획(안)』, 2006. 11.
- 강원도,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0. 3.
- 강원도,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2012. 12.
- 강원랜드, 『반기보고서(2013.06)』, 2013. 8. 14.
- 강원랜드, “강원랜드 연혁”,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History/html.high1?tab=2#contentPoint>
- 강원일보, “폐광지 개발기금 수천억 배분해 달라”, 2013. 8. 28.
- 대한석탄협회, 『탄협』, 2012.
- 박창석,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쟁점과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2호, 2013. 6, pp 111~134.
- 법제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 3.
- 법제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3.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삼일회계법인,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구조 개선 및 법령 재정비 용역』, 한국광해관리공단 의뢰연구, 2013. 4.
- 새전북신문, “유바리시의 교훈”, 2013. 6. 4, <http://www.sjb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434492>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폐광에 따른 산탄지역 진흥대책에 관한 연구 : 태백·정선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수행연구, 1991.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사업단10년사』, 1997. 6.
- 에너지경제연구원, 『炭鑛地域 振興事業 5個年 計劃』, 강원도 의뢰연구, 1992. 1.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탄산업 정책방향의 재정립 연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의뢰연구, 1998. 11.
-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원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강원도 의뢰연구, 2002. 2.
- 에너지경제연구원, 『태백시 대체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태백시 의뢰연구, 2002. 10.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탄산업 장기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의뢰연구, 2005.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탄산업 장기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광해관리공단 의뢰연구, 2011. 1.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13. 8.
- 이원우 외,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투자실적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91-06, 1991.
- 이원우 외, 『석탄산업 종합대책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992.
- 정진성, “에너지혁명기 일본석탄산업의 노동운동 - 석탄정책전환투쟁을 중심으로 -”, 『韓日經商論集』 第56卷, 2012.
- 정진성, “일본의 산탄지역진흥정책”, 서울대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8호, 2013.
- 정진성, 『일본의 산탄지역진흥 추진내용과 성과』, 자문 원고, 2013. 5.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2. 12.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1.

통계청, “e-지방지표”, 2013. 3.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도시행정연구소, 『전국통계연감』, 1997 및 2002.

MK뉴스, “세금늘려 지자체 빈 공간 채운다”, 2013. 7. 12.

産炭地域振興審議會, 審議資料, 각 년도

産炭地域振興事業団, 『産炭地域振興事業団十年史』, 1972.

高橋伸一, 『移動社會と生活ネットワーク - 元炭鉱労働者の生活史研究』, 高菅
出版, 2002.

九州經濟産業局, 『九州産炭地域の現況』, 2001.

九州大學産炭地問題研究所, 『産炭地域住民の生活實態調査 報告書(1)』 (謄寫
版), 1964.

勞働省篇, 『資料勞働運動史』, 勞務行政研究所, 1960.

大同通信社, 『石炭年鑑 1962年版』, 大同通信社, 1962.

石炭經濟研究所, 『石炭鉱業の諸問題 - 新石炭政策の背景 -』, 1962.

石炭エネルギーセンター, 『石炭政策史』, 資料編, 石炭政策史 編纂委員會編,
2002. 8.

矢田俊文, “構造不況産業と地域政策 - 戦後日本の石炭産業の衰退と産炭地域政
策”, 『産業學會年報』, 第10号, 1995.

岩本直, “産炭地域政策の政策効果に關する研究”, 『第32回土木計畫學研究・講演集』, 2005, http://www.jsce.or.jp/library/open/proc/maglist2/00039/200511_no32/index.html

若林良和, “閉山に伴う地域社會の変貌”, 高橋伸一編(2002)에 수록.

日本石炭鉱業經營者協議會篇, 『石炭勞働年鑑』, 1959.

資源エネルギー廳, 『産炭地域 振興對策の 概要』, 1997.

資源エネルギー廳 石炭部, 『産炭地域振興對策の現想と今後の検討事項』, 1980.

6.

田浦良也(1998), “石炭産業の崩壊と筑豊經濟の変貌”, 平兮元章・高橋薫・内海洋一編著(1998)에 수록.

澤口恵一, “石炭産業の衰退と漸進的撤退の戰略 - 常磐炭田の事例から”, 『大正大學研究紀要』, 第96輯, 2011.

通商産業省 産炭地域振興課, 『産炭地域の現況』, 1972. 10.

平兮元章・高橋薫・内海洋一編著, 『旧産炭地の都市問題 - 筑豊・飯塚市の場合 -』, 多賀出版, 1998.

정책 이슈페이퍼 13-05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구조 개선 및 법령 재정비

2013년 11월 27일 인쇄

2013년 11월 29일 발행

저 자 권 혁 수 외

발행인 손 양 훈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437-713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전화: (031)420-2114(代) 팩시밀리: (031)422-4958

등 록 1992년 12월 7일 제7호

인 쇄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
